

# 2021년 SPA 형법 전면개정판 정오표(1쇄기준)

## 〈총론 I 권〉

p.78 중간 ④ 절충설 내용 중 글자수정

④ 절충설(부분적 긍정설, 이분설) : 형사범에 ~ 법인의 범죄능력을 ~

⇒ ④ 절충설(부분적 긍정설, 이분설) : 형사범에 ~ 법인의 범죄능력을 ~

p.114 중간 “(예) 乙의 경우” 삭제

① 행위자가 일정한 고의(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제1행위)를 하였으나 그의 의도와는 달리 연속된 다른 행위(제2행위)에 의해 원래 의도한 결과(사망)가 실현된 경우(예) 乙의 경우

## 〈각론 I 권〉

p.16 확인학습 17번 글자 수정

17 위계계 또는 ~ ⇨ 위계 또는 ~

p.136 7째줄 글귀 추가

① 진실인 사실을 공연히 유폐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

⇒ ① 진실인 사실을 공연히 유폐하여 타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

p.282 하단 관례판례 ① 판례번호 수정

① 방송기자가 ~(대판 1991.5.28, 91도668)

⇒ ① 방송기자가 ~(대판 1991.5.28, 91도80)

## 〈각론 II 권〉

✓ 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9~p.46).

p.9 하단 3번 판례(3. 동산의 양도담보(예) ①~④ 포함) 전체 삭제

이하 번호 수정(10페이지 4.~10. ⇨ 3.~9.)

p.12 하단 15번 판례 아래 16번 판례 추가

16. 동산의 양도담보 :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담보물)을 점유 개정에 의하여 계속 점유하던 중 제3자에게 임의처분한 경우 ⇨ 배임죄 × (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예) 회사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담보를 위해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회사 운영자)가 은행(채권자)이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보관·관리할 의무나 임무를 위배하여 타에 매각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 배임죄 ×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채무담보를 위하여 동산이나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391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18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대법원 2011. 11. 22. 선고 2010도7923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p.24 중간 수정 ②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와 이중매매** ⇨ ② **동산의 이중매매**

하단 관련판례 “•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1번, 2번 판례 전부 삭제

p.36 문제 3번 해설 ④ 전체 수정

④ × : A는 물론 B에 대한 관계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p.43 문제 14번 해설 ㉠ 전체 수정 및 정답 교체

㉠ × : 배임죄 ×(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정답 ② ⇨ 정답 ③

p.45 문제 19번 지문 ④ 뒷부분 수정 및 해설 수정

④ 금전채권을 ~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④ 금전채권을 ~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대판 1989.7.25, 89도350 ⇨ ④ 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p.214 관련판례 4. 판례번호 교체

4. 공무원(중간결재자)이 ~ **직무유기죄** ×(대판 1997.8.29, 97도675)

⇨ 4. 공무원(중간결재자)이 ~ **직무유기죄** ×(대판 1997.2.28, 96도2825)

p.266 14째줄 “4. 기타” ② 판례번호 교체

② 공무원(중간결재자)이 ~ **직무유기죄** ×(대판 1997.8.29, 97도675)

⇨ ② 공무원(중간결재자)이 ~ **직무유기죄** ×(대판 1997.2.28, 96도2825)

p.304 “**4** 증거인멸죄” 법조문 수정

**제155조 제1항**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5조 제4항** 친족,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